

계약번호 : FSyyyymmddxzz

## 거래기본(공급)계약서

(주)에프에스티(이하 ‘사용자’라 한다.)는 물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\_\_\_\_\_(이하 ‘공급자’라 한다.)과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### 제 1조 목적

“사용자”와 “공급자”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“사용자”가 요청하는 물품을 “공급자”는 적기에 공급하고 “공급자”는 이에 따라 안정된 생산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상호 분업적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다.

### 제 2조 공급계약의 체결

본 계약은 “사용자”와 “공급자” 간의 공급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계약의 내용은 개별계약서(발주서 등 전자문서를 포함)의 내용에 따른다.

### 제 3조 개별계약의 체결

- 1) “사용자”는 개별계약을 반드시 문서(발주서 등 전자문서를 포함)로 발행해야 한다.
- 2) “공급자”가 발주서 등 개별계약의 내용 접수 후 3영업일 내에 서면으로 거부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,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.

### 제 4조 개별계약의 변경 및 취소

- 1)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“사용자”와 “공급자”는 상호 합의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서면(발주서 등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변경할 수 있다.
- 2) “공급자”는 계약의 변경 및 취소가 발생한 경우, 즉시 제조과정을 중단해야 하며, 자재의 주문 취소 등 변경 및 취소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.

### 제 5조 납기 준수

- 1) “공급자”는 “사용자”의 주문서 상의 납기에 응하지 못할 시에는 주문서 입수 후 3일 이내에 “사용자”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단 통지가 없을 시에는 “사용자”的 납기에 응한 것으로 본다.
- 2) “사용자”는 “공급자”가 주문서 상의 납기 내에 계약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치 못할 시는 자체 일수 1일에 대하여 해당 발주 금액의 1.5/1000을 지체 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“공급자”는 이에 대해 배상한다. 단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인한 것이라고 “사용자”가 인정할 시는

지체 배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.

#### 제 6조 계약 물품 인도

- 1) “공급자”는 주문서 상에 표기된 “사용자”의 지정 장소까지 계약 물품을 인도할 책임이 있다.
- 2) “사용자”와 “공급자”는 상기1)항의 인도 장소에서 물품 인도 즉시 양자 입회 하에 인도 물품의 수량을 확인하며 “사용자”는 물품 수령을 완료한 후 즉시 인수증(보관증)을 “공급자”에게 발급한다.

#### 제 7조 검사 방법 및 기간

##### 1) 검사 방법

납입 물품의 검사는 “사용자”와 “공급자”의 협의 하에 실시하며, “공급자”는 자재 납품 시 “사용자”가 제시 또는 상호 협의된 검사 기준에 의해 실시된 자체 검사성적서를 첨부해야 한다.

##### 2) 검사 시기

“사용자”는 “공급자”가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납품일을 기준으로 하여 15일 이내에 합격 여부를 “공급자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단, 검사 기간에 대하여는 납입 물품의 특성상 검사에 시일을 요하는 경우에는 “사용자”는 합리적 기일을 “공급자”에게 통보함으로써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.

#### 제 8조 대금 지급

납품된 물품 대금의 지급은 “사용자”와 “공급자”의 상호가 수령 및 지급의 편의상 월 1회 마감 집계하여 계산하고, “사용자” 결제 조건에 의거 지급한다.

#### 제 9조 품질 및 하자 보증

- 1) “공급자”는 “사용자”에게 납품한 물품에 대한 “품질보증기간”을 납품 후 2년 또는 별도로 사전에 약정한 기간으로 하며, 이 기간 동안 해당 물품의 품질을 보증하며 이의 하자로 인하여 “사용자”에게 발생되는 손실 비용은 “공급자”가 배상 책임을 진다.
- 2) 납입한 물품이 검수 결과 하자가 있을 시 그 하자가 “사용자”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지 않은 경우 “공급자”는 “사용자”의 선택에 따라 반품 교환 또는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.
- 3) “공급자”는 “사용자”에게 납품한 물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공정 및 공법의 변경, 하도급사업자의 변경, 금형수정, 자재 및 검사자 변경 등의 경우 “사용자”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진행 한다.
- 4) “사용자”의 공정 중 발생된 불량이 “공급자”의 자재 불량이 그 원인으로 판명되고 이로 인하여 “사용자”에게 손해가 발생된다면 “공급자”는 그 배상 책임을 진다.

#### 제 10조 피해 및 손해 보상

“공급자”가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발생한 다음의 제반 안전 사고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1) “사용자”가 제시한 각종 안전 수칙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인적, 물적 사고에 대해서는 “공급자”가 보상한다.
- 2) 양자 상호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는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, 만일 합의치

못할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.

#### 제 11조 기술 향상 및 품질 개선

“공급자”는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개선을 위하여 생산 공정의 개선 및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품질 향상과 원가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.

#### 제 12조 재외주

“공급자”는 계절성 수요 초과 물품이나 자체적인 계열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“사용자”的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계약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제조 위탁할 수 있다. 단 이 경우에도 “공급자”는 사용자에게 대한 의무의 이행을 면할 수 없다.

#### 제 13조 비밀 보장

“공급자”는 제조 위탁에 의하여 알게 된 “사용자”的 업무상 기밀(도면, Film, 자료, 금형 등 “사용자”的 모든 Know-how)을 사전 서면에 의한 상대방의 승인을 얻지 않는 한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# 제 14조 공업소유권의 침해 금지

“사용자”的 소유로 되어 있는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의장권, 상표권 등의 산업체산권을 “공급자”는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“사용자”的 사양에 의해 “공급자”가 승인을 받은 제품은 “사용자”的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“공급자”가 임의로 제조, 판매할 수 없다.

#### 제 15조 보증의 면책

“공급자”는 본 계약하의 모든 공급 품이 특허권, 저작권, 상표권, 영업 비밀, 기술 선취권, 또는 채무, 변경에 관한 제 3자의 클레임에 저촉되지 않음을 보증한다. ”공급자”는 그러한 제 3자의 요구에 수반되는 모든 클레임, 요구사항, 비용, 소송 등으로부터 “사용자”가 해가 없도록 배상 또는 보전하는 데 동의한다.

#### 제 16조 계약의 해제

1) “사용자”는 “공급자”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본 약정을 해제 할 수 있다.

- 가. “공급자”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
  - 나. “공급자”가 감독 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,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
  - 다. “공급자”가 제 3자로부터 가압류, 가처분, 강제 집행 등을 받아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라. “공급자”에 대해 파산 또는 회사 정리 절차가 시작될 경우
  - 마. 기타 “공급자”가 계약 내용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불가능한 경우
- 2) “사용자”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약정을 중도에 해제코자 할 때는 “공급자”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### 제 17조 윤리 규정

“사용자”는 “공급자”와 거래에 있어서 호혜의 원칙에 따라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며 “사용자”的 권한과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. “공급자”는 거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“사용자”的 직원과 그 가족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.

### 제 18조 계약 기간

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, 일방 당사자에 의해 본 계약 만료 전에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며 그 이후에도 동일하다. 단 계약 만료 후 1개월 내에 종료 의사를 표시할 시 계약 종료가 가능하다.

### 제 19조 계약 해석

본 약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기타 변경 사항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쌍방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 년 월 일

“사용자”

124-81-23841

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6길 15-23

주식회사 에프에스티

대표이사 장 경빈

“공급자”

(인)

대표이사

(인)